

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77
----------	-----

2023. 9. 19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3년 8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23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23년 9월 7일

- 제41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지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심리회복, 임시거처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생활안정 및 일상복귀 등에 실효적으로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“화재피해주민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
-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, 심리회복 지원, 임시거처 지원,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임시거처와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일상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지방자치법」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.
- 이 조례는 “화재피해주민”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차상위계층, 중증장애인, 독거노인 등 사회적 배려가 요구되는 계층에 대한 임시거처 지원이 주요 내용임.

□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 현황

기준 : '21~'22년말

구 분	가구수	인 원	담당부서	비 고
합 계	189,043	366,157		
기초생활수급자	58,468	78,709	복지정책과	
차상위수급자	21,998	32,335	복지정책과	
중증장애인	-	97,966	장애인복지과	
홀로사는 노인	102,310	102,310	노인복지과	
한부모 가정	6,267	16,117	양성평등가족정책관	
다문화 가정	-	38,720	양성평등가족정책관	

- 현재 화재피해를 입은 도민 중 취약계층에게 지원되는 생활안전자금(119천사기금)은 소방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된 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10년간 연평균 15명에게 지원하였음.
- 조례 제정을 통해 수반되는 예산은 연 735만원 가량으로 가구당 7만원씩 최대 7일간 추계한 사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 특별한 문제는 없음.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.
 - 안 제2조는 “화재피해주민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 - 안 제4조는 주민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 금지 사항을 규정함.
 -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종류, 심리회복 지원, 임시거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- 조례안 예고('23. 8. 29.~'23. 9. 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제정안은 총 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조문 내용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.
- '23년 9월 기준 11개 시도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, 충북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옥천, 단양, 제천군에서 시행 중임.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함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화재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임시거처와 심리지원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일상회복과 심신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(박지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8월 24일
발의자 : 박지현, 이동우, 김종필,
김호경, 박진희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심리회복, 임시거처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생활안정 및 일상복귀 등에 실효적으로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“화재피해주민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마.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, 심리회복 지원, 임시거처 지원,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다. 협의 :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응총괄과
- 라. 조례안 예고 : 2023.8.29.~2023.9.4.(의회홈페이지)

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화재피해주민”이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4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
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6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화재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중복지원의 금지)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제5조(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)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심리회복 지원
2. 임시거처 지원

3.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

4.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심리회복 지원)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·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(임시거처 지원)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, 1일 지원 금액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관계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유관기관 협력 지원)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, 민간기업·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<생 략>

2. “수급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
3. ~ 9. <생 략>

10. “차상위계층”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
(중위소득의 50% 이하의 계층)

□ 장애인복지법

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(이하 “중증장애인”이라 한다)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한부모가족지원법
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모” 또는 “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
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다.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

라. 미혼자{ 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1의2. “청소년 한부모”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
2. “한부모가족”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
3. “모자가족”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4. “부자가족”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5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
6. “지원기관”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
7. “한부모가족복지단체”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5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

□ 노인복지법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□ 다문화가족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2. <생략>

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일상복귀 등에 실효적으로 기여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제5조(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)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1. 심리회복 지원
 2. 임시거처 지원
 3.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
 4.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재정수반요인 : 도민의 임시거처 지원을 위한 사업비

(비용추계 세부내역 참고)

나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4년 ~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

다. 추계결과 : 36,750천원

- 임시거처 지원 : 36,750천원

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